

[별첨2] 정관 신규조문 대비표

변경 전	변경 후
<p>제38조(이사회의 구성과 소집)</p> <p>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.</p> <p>② 이사회는 <u>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7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.</u></p> <p>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</p> <p>④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</p> <p>⑤ 이사회 의장은 <u>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소집권자로 한다.</u></p> <p>⑥ 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 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	<p>제38조(이사회의 구성과 소집)</p> <p>① (현행과 동일)</p> <p>②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회일 7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.</p> <p>③ (현행과 동일)</p> <p>④ (현행과 동일)</p> <p>⑤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.</p> <p>⑥ (현행과 동일)</p>